

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

2. 지출내역

○ 총괄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예산액	지출결정액	예산잔액	비 고
일반회계	3,053,181	424,243	2,628,938	

○ 사업별 지출내역

(단위:천원)

사 업 명	지출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	지출일자	사 유
계	424,243	422,699	-	1,544		
'05. 4. 1일자 직제개편 관련 경비	200,000	200,000	-	-	'05.03.29	청소행정과 사무실 임차
	14,400	13,300	-	1,100	'05.03.29	직제개편부서 사무실개·보수 및 전산망 구축
	15,093	14,753	-	340	'05.03.30	직제개편 부서 비품구입
	1,800	1,800	-	-	'05.04.01 ~12.31	청소행정과·재난안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
	6,450	6,446	-	4	'05.04.01 ~12.31	청소행정과·재난안전과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
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	178,500	178,500	-	-	'05.09.13 ~10.18	사하F.R센터 가동중단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민간 위탁금
신청사건립 용역비	8,000	7,900	-	100	'05.11.23	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

3. 관련법령

○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

4. 검토의견

○ 2005년도 우리구 예비비 예산액은 30억 5,318만 1천원이며 이중 년도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억 2,424만 3천원입니다.

○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2005년 4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경비를 비롯한 3건에 총 4억 2,269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.

지출 세부내역은 청소행정과 사무실 임차료 2억원 등 직제개편 관련경비 2억 3,629만 9천원, 사하음식물자원화센터(F·R센터) 가동중단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1억 7,850만원, 신청사 건립용역비 790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2005년도 이월은 없습니다.

○ 지출 후 남은 불용액은 154만 4천원으로서 대부분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·보수비로 지출되고 공사금액 절감에 따른 남은 금액입니다.

○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서 특히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은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 지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됩니다. 향후 예비비 지출시는 편성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겠습니다